

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수정안

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3명 이내로” 를 “3명으로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제” 로, “새로이” 를 “새로” 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 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 로 하고,
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” 을
“임기 ∨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” 로 하며,
같은 조 제2호 중 “지득한” 을 “알게 된” 으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해촉을” 을 “위촉 해제를” 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해촉될” 을 “위촉 해제될” 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못하는 때에는” 을 “못할 때에는 위원장의
사전 동의를 얻어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대하여는” 을 “대해서는” 으로 한다.

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“제33조제5항·
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” 을 “제33조 제9항·제10항에 따
른” 으로 개정하고, 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주요사업의 투자심
사” 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3명으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위촉 해제 ----- 새로----- -----.</p>
<p>제6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. (생략) 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. (생략) 	<p>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 임기 전이라도 ----- 위원을 위촉 해제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알게 된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위촉 해제를 - 5. (현행과 같음)

<p>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촉</u>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</u> <u>해제</u>될 ----.</p>
<p>제9조(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<u>못하는</u> 때에는 <u>직무대행 공무원을</u>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9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못할</u>---- --- <u>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</u> <u>직무대행 공무원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수당 및 여비) ----- ----- --- <u>대해서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부칙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중 <u>제2조제1항제2호 “주요사업의 투자심사”</u>를 삭제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<u>제1조 중 “제33조제5항·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”</u>을 “제33조 제9항·제10항에 따른”으로 개정하고, <u>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주요사업의 투자심사”</u>를 삭제한다.</p>